

제 호
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증

- 대표자: (생년월일: - xxxxxxxx)
- 시설명칭:
- 소재지:

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수리함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(뒤쪽)

[illegible]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